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83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이용우·모경종·이원택

진선미 • 민병덕 • 김한규

김교흥 • 박정현 • 박주민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
	하는 상황 등으로 본회의가 정
	<u>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u>
	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
	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
	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
	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
	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